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7가단516891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한국무역보험공사

피고1. A 주식회사

2. B

3. C 주식회사

변론 종결2018. 4. 10.

판결 선고2018. 5. 3.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8,742,970원과 그 중 187,437,090원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2017. 9. 12.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가.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2016. 10. 1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A 주식회사에 전주지방법원 전주 등기소 2016. 10. 19. 접수 제113377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5.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금전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한도액을 186,300,000원, 보증기한을 2017. 9. 8.까지로 하여 수출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에 수출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6. 9. 12. 피고 A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한도를 207,000,000원, 변제기한을 2017. 9. 8.로 정하여 피고 A에 대출하였다.

다. 그러던 중 피고 A이 2016. 12. 29. 대출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17. 2. 23. 중소기업은행에 187,437,09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피고 A에 대한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보전비용으로 1,305,880원을 지출하였다. 이 사건 보증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A은,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이율은 연 10%이다.

라. 한편 피고 A은 2016. 10. 18.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 한다)와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19. 피고 C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7. 4. 10.을 기준으로 그 감정가액이 1,866,460,500원이었다. 한편 피고 A의 소극재산은 2016. 12.을 기준으로 은행총계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이 48억여 원에 이르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 피고 A,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 피고 C: 갑 제1호증부터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과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과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187,437,090원과 채권보전비용 1,305,880원의 합계 188,742,970원 및 그 중 187,437,09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7. 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최종 송달일인 2017. 9. 1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부분

가.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전에 성립하여 있을 것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전에 이미 이 사건 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피고 A의 재정 상태 악화로 구상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2달여 지난 후에 피고 A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한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C에 대한 채무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C는 피고 A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미선

별지